

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4. 12(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3. 23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3. 23
- 라. 상정일자 : 2010. 4. 6.(제18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)
 - 제안설명 : 기획관리실장 정병일
 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소비세가 시·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(안 제4조)
 -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에 이양하여 만든 지방소비세를 시·도세로 도입함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.
-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약칭 생략 및 일부 자구 수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○ 동 조례안은

-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시세로 도입되어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 중 재정보전금 재원 관련규정이 일부 개정(2010. 1. 1)됨에 따라
- 재정보전금의 재원, 산정·배분방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.

○ 재정보전금 재원 확대는

- 재정보전금 재원이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%에 해당하는 금액과 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말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확대함으로써
- 시의 재정보전금 재원규모가 2010년 당초예산보다 6억 1,400만원 증가한 13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. (※ '10년 예산 : 128억 8,600만원)

〈조례개정후 자원부담 - 2010년 당초예산 기준〉

□ 재원구성

-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% (당초)
- 지방소비세액 일정액의 27% (광역시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광역시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)

□ 산정내역

-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% : 12,886백만원('10년 본예산)
- 지방소비세액 일정액의 27%
 - 인천시 지방소비세액 72,273백만원 / '09년말 시 인구 2,710,579명 × '09년말 군 인구 85,270명 = 2,274백만원 × 0.27 = **614백만원**

○ 금번 조례개정은

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은 없으며
- 다만, 금년에 도입된 시세인 지방소비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윤지상, 김소림, 이상철, 조남휘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찬성 : 4명)

7. 기타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 임 : 1. 인천광역시 군의 재정정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6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6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고, “시”를 “인천광역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·제3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1.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(공동시설세,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)의 총액
 2. 인천광역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

제6조제2항 중 “ 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② 제1항에 의한 재원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하고,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금액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재정보전금의 산정·교부) ①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6조제3항에 의한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비례와 시세징수율, 재정력지수에 의거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.</p> <p>② 시책추진보전금은 <u>다음 각 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.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군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. 시세징수실적이 우수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사업 4. <u>기타</u>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재정보전금의 산정·교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--- ----- 3. ----- ----- 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